#### KOSHA GUIDE

C - 40 - 2011

# 4.2.2 안전난간

갱폼에서 작업용 발판이 설치되는 지점(위치)의 상부 케이지 외측과 하부 케이지 내·외측에는 발판 바닥면으로부터 각각 45 cm ∼ 60 cm 높이에 중간난간대, 90 cm ∼ 120 cm 높이에 상부난간대를 바닥면과 평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다만, 근로자의 작업발판 연결통로로 사용되는 하부 케이지 내측 부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다.

### 4.2.3 추락방호대

상부 케이지 외측 수직재(각파이프)는 거푸집 상단 높이보다 1.2 m 이상 높게 설치하고 그 상단과 중앙에 안전난간대를 2줄로 설치하여 슬라브 상부, 단부 작업자의 갱폼 외부로의 추락 및 낙하물을 방호한다.

### 4.2.4 갱폼 케이지간의 간격

갱폼 거푸집과 거푸집을 연결·조립하는 결속 브라켓(Joint bracket) 부분의 케이지 수직재 및 발판재간의 간격은 갱폼 인양시 케이지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간격 20 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작·설치하여 근로자의 브라켓 결속작업 또는 작업발판 이동시 추락을 방호하여야 한다.

## 4.2.5 케이지 코너 마무리

갱폼 거푸집과 거푸집이 90°로 만나는 건물 코너부 케이지는 4.2.4항의 케이지 및 작업발판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<그림 2> 예시도와 같이 케이지 및 작업발판의 외측부재를 내측보다 45° 각도로 길게 제작하여 사다리 꼴로 코너 마무리 하여야 한다.